

**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 
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**

의안 번호	2014 ~ 31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4. 4. 30.
제 출 자	거창군수

**1. 폐지이유**

○ 과태료 부과기준 등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(과태료의 부과)에 명시되어 있으며, 그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따르면 되고,

○ 1회용품 사용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으로 환경부의 「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지침」이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**2. 주요내용**

○ 「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」를 폐지함

**3. 참고사항**

**가. 관계법령**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조
- 환경부의 「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」 폐지 -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삭제

**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**

**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**

**라. 기타사항**

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 : 원안의결
- (3) 입법예고
  - (가) 예고기간 : 2014. 3. 28. ~ 4. 17.
 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(4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- (5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 
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

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 
지급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